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청장 외부 임용 근거 마련〉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15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07. 02.
3. 회부연월일 : 2025. 07. 0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 임용 시 필요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경찰청장) ① ~ ⑩ (생략) <u><신설></u>	제14조(경찰청장)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u> <u>1. 15년 이상 치안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u> <u>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u>

현행	개정안
<신 설>	를」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기간의 합산이 20년 이상인 사람 ⑫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

현행	개정안
	<u>원 또는 제11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5. <u>제1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경찰청장의 임명에 대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한다¹⁾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승진 체계를 통해 치안정감에 이른 자 중에서만 임명되는 구조임.

이처럼 경찰청장 직위가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을 국가수사본부장과 같이 외부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용²⁾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계, 학계, 행정 등에서 일정한

1) 「경찰공무원법」 제15조제1항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단서 생략)

경력과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폐쇄적인 내부 승진 구조를 개선하고 외부의 혁신역량과 다양한 전문성을 경찰조직 운영에 반영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다만, 외부 임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므로, 찬반 논거와 타 기관 및 해외 사례,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먼저, 찬성하는 견해로는 조직 혁신과 개혁 촉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음.

오랜 기간 내부 승진 체계로 운영되어 온 경찰조직에 외부의 전문성과 새로운 시각을 유입시켜 폐쇄적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법조계, 학계, 행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임용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치안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⑤ 생략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기여할 수 있음.

특히 국가수사본부장 등 일부 경찰 고위직에서 외부 인사 임용이 가능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기반³⁾이 마련되어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외부 인사 임명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됨. 외부 인사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임명될 경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경찰청장 임명에서도 재현될 수 있음.

또한, 오랜 기간 내부 승진 체계로 운영되어 온 경찰조직에서 외부 인사가 최고 책임자로 임명될 경우 내부 반발과 사기 저하, 조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외부 인사는 경찰 실무와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 대응력이나 지휘력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다음으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경찰과 같이 특정직 공무원 조직인 소방, 해양경찰의 경우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또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각각 청장을

3) 국가수사본부장 외에, 경찰청 감사관 및 경찰병원장 역시 외부임용 가능

직위	보직 가능 직종	현직자	현직자 임기	채용방식
감사관	일반직·임기제·경무관	000	24. 4. 22. ~ 26. 4. 21. ※ 2년 임기, 5년까지 연장 가능	공고 채용
경찰병원장	임기제	000	23. 2. 15. ~ 26. 12. 31. ※ 3년 임기, 5년까지 연장 가능	공고 채용

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경찰청장과 같이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직군(판사·검사 및 변호사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한 개방형으로 임명하고 있음.

< 특정직 공무원 청장 임용 >

구 분	근거 법령	자 격
검찰총장	검찰청법 제27조	다음 각 호의 직위에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략)...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법 제12조 ⁴⁾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①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②재직했던 사람
소방청장	정부조직법 제34조	소방공무원

해외의 경우 한국과 같이 폐쇄형으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되는 곳도 있고, 개방형으로 외부인사가 임용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국가경찰체계와 비슷한 곳이 많지 않으므로 단순한 참고사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4) 「해양경찰법」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주요국 사례 >

구 분		개방형 여부	비 고
일본		경찰관 중 임명	직업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승진임용
미국	LA		
	NY	개방직	대체로 경찰관 출신 임명 -지방청장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대다수
영국	NCA 청장		
	런던 경찰청장		
독일	연방 경찰청장	개방직	경찰·행정관료 출신 혼재
	연방범죄 수사청장		경찰·법률가 출신 다수
	주경찰청장		민간인 가능

※ 자료: 경찰청.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부처 의견으로,

경찰청은 경찰청장의 외부 임용제도 도입이 조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경찰업무의 전문성과 조직 지휘체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내부 승진 체계와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이 필요하며, 외부 임용 시 경찰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신중 검토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45

[참고자료]

<주요국 경찰청장 등 임용사례⁵⁾ 연구>

국가	직위	임명 주체	출신 제한 여부	개방형 임용 사례
미국	FBI 국장	대통령 임명 + 상원 청문	경찰 출신 필수 아님	크리스토퍼 레이 (로펌 변호사 출신)
	NYPD 청장	뉴욕시장 임명	민간인 가능	버나드 케릭 (교정청장 출신, 비경찰)
독일	연방 경찰청장	내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경찰·행정관료 출신 혼재	디터 로만 (행정관료 경력 후 임명)
	연방범죄 수사청장	내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경찰·법률가 출신 다수	홀거 뮌크 (州 경찰청장 출신)
	주경찰청장	각 주 내무장관 임명	민간인 가능	Wolf-Dietrich Hammann (행정관료법학자 출신)
중국	공안부장	국무원 → 당 중앙	경찰 출신 필수 아님	자오커즈 (정치인 출신), 저우융캉 (비경찰)
스페인	국가 경찰청장	정부 임명	경찰 출신 필수 아님	프란시스코 파르도 (정치인)
이탈리아	국가 경찰청장	내무부 임명	경찰 출신 필수 아님	일부 행정정책 전문가 출신 임명 사례 有
일본	경찰청장관	국가공안위원회	경찰관	개방형 아님

5) 출처: 이순구, 박상진, 류용현, “경찰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4권 1호(2025), 8-12.

<경찰청장(개정안) 및 국가수사본부장(현행) 자격요건 비교>

구 분	자 격
경찰청장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u>15년 이상</u> 치안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u>15년 이상</u>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u>15년 이상</u>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u>15년 이상</u>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u>20년 이상</u>인 사람
국가수사 본부장 (현행)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u>10년 이상</u>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u>10년 이상</u>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u>10년 이상</u>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u>10년 이상</u>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u>15년 이상</u>인 사람